

서남권 돛구장 부설 수영장 및 체력단련장에 대한 제3자 위탁 동의안 심 사 보 고 서

| | |
|----------|------|
| 의안 번호 | 1007 |
|----------|------|

2016년 3월 9일
문화체육관광위원회

1. 심사경과

- 가. 제출자 : 서울특별시
- 나. 제출일자 : 2016년 2월 11일
- 다. 회부일자 : 2016년 2월 15일
- 라. 상정결과 : 제266회 서울특별시의회 임시회 제5차 문화체육관광위원회
(2016년 3월 7일, 상정·원안가결)

2. 제안설명의 요지(관광체육국장 김의승)

가. 제안이유

- 시설관리공단이 서울시로부터 수탁받아 운영·관리하고 있는 서남권 돛구장 중 전문적인 관리가 필요한 수영장 및 체력단련장을 서울시체육회에 위탁하기 위하여
- 『서울특별시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9조 제5항에 따라 시의회 의결을 받고자 하는 것임

『서울특별시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9조(대행사업) ① 공단은 시장의 승인을 얻어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그 밖의 위탁자의 사업을 대행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위탁계약에 의한다.

⑤ 공단은 제1항에 따른 사업을 대행함에 있어 시장의 승인을 얻어 그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3자로 하여금 시행하게 하는 경우에도 시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 다만, 이미 시의회의 승인을 얻은 사업이 완료되어 재계약하는 경우와 청소·경비·일상적 시설관리업무를 재위탁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⑥ 제1항 및 제5항에 따른 비용의 부담에 관하여는 제25조에 따르고, 그 이외의 필요한 사항은 위탁자와 수탁자가 상호 협의하여 정하되 시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나. 주요내용

(1). 서남권 돛구장 부설 수영장 및 체력단련장 제3자 위탁 개요

- 대상시설 : 서남권 돛구장 부설 수영장 및 체력단련장
- 수탁자 : 서울특별시체육회(회장 : 박원순)
- 위·수탁기간 : 2016. 4.1 ~ 2017.12.31.(약 1년 8개월)
- 위탁방법 : 시설관리공단과 서울특별시체육회간 협약

(2). 제3자 위탁 주요내용

- ① 수영장 및 체력단련장 개장초기 안정화 기반 조성
- ② 체육시설 운영의 공공성 확보 및 이용활성화 관리·운영방안 수립 및 시행
- ③ 위탁 범위, 위탁조건 및 사업수행에 관한 사항
 - ▶ 위탁재산의 관리·운영 및 시설·장비 유지보수에 관한사항
 - ▶ 사업의 운영수익금, 사업의 지출에 관한 사항
 - ▶ 사용료 징수시 「서울특별시립 체육시설 및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적용
- ④ 이용시민의 안전관리를 위한 재난관리계획 수립 및 교육실시

⑤ 시의 별도 재정지원없이 독립채산제로 책임경영하되 초과 수익 발생시 시세입 처리

- ▶ 위탁사용료 없이 초기 투자비용, 시설 개·보수 비용 등 관리 운영에 수반되는 비용 일체 부담

(3). 서울시체육회 제3자 위탁 필요성

- 일반사업자 임대운영시 시설투자 대비 수익확보가 어려워 입찰 포기 또는 중도 사업포기 가능성이 높고, 이용시민에게 비용부담을 전가하는 등 시립체육시설의 공공성이 훼손될 우려가 있음

※ 유사사례

- ◆ 장충체육관 부설 체력단련장이 5회 유찰('15.5.7)됨에 따라 시설관리공단에서 용도변경하여 직접 운영

- 서울시체육회 위탁시 체육시설 운영 노하우 및 전문 프로그램 활용으로 이용시민에게 저렴한 고품질의 서비스 제공이 가능하고
- 인근 학교의 체육 교육장소 및 운동부 훈련 장소로도 활용이 가능함

다. 참고사항

(1). 관계법령

- 「서울특별시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9조
 - ▶ 제3자 위탁시 시의회 의결 및 시장 승인 필요
-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14조
 - ▶ 수탁기관은 수입금의 일부를 시설운영에 사용 가능
- 「서울특별시립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6조
 - ▶ 시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체육시설의 운영과 관련되는 사무 중 일부 또는 전부를 체육진흥에 이바지할 수 있는 법인·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

(2).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3). 합 의 : 해당사항 없음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수석전문위원 김남중)

가. 동의안 개요

- 본 동의안은 시설관리공단이 서울시로부터 수탁받아 운영·관리하고 있는 서남권 돔구장 중 전문적인 관리가 필요한 수영장 및 체력단련장을 서울시체육회에 위탁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9조제5에 따라 사업의 일부를 제3자로 하여금 시행하기 전 서울특별시의회의 의결을 구하기 위하여 제출되었음.

나. 서남권돔구장 건립 개요

- 서남권돔구장은 2007년 동대문 운동장 공원화 추진에 따른 대체 야구장 건립을 위해 시작한 사업이 2008년 북경올림픽 야구 우승, 2009년 월드베이스볼클래식 준우승 등에 따른 국민적 야구 붐을 반영하여 국내 최초 돔구장 건립으로 변경되었고,

그 외에도 수익시설 설치로 운영수지 적자개선, 관람객과 시민의 교통불편 최소화, 야구장 기능 개선, 공연친화적 시설 개선 등 다양한 이유로 여섯 차례 사업계획이 변경된 끝에 2015년 11월 개관함.

다. 수영장 및 체력단련장 제3자위탁(안)추진배경

- 2015년 11월 23일 제264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관광체육국 행정사무감사시 돝구장내 수영장 및 체력단련장을 서울시체육회에 활용 방안에 대해 검토하라는 우리위원회 의원의 요청이 있었으며,

2015년 11월 24일 서울시설관리공단의 이러한 시설의 서울시체육회 위탁방안에 대한 시장 보고가 있었으며, 서울시체육회 운영능력을 충분히 검토 후 추진하라는 시장 지시를 통하여 추진하게 된 것임.

이에 서울시는 서울시체육회가 전문 체육기관으로서 서울시 소속 종목별 우수 전문 지도자 및 은퇴선수를 활용한 인력 확보가 안정적이고, 서울시체육회 체육진흥기금 관리운영규정 제2조제3항과 제6조제3항에 따라 자체적으로 조성된 체육진흥기금 30억원(79 체육회 임원진들의 찬조금으로 적립)으로 체육시설 운영 사업 수행이 가능하며,

〈 관련근거 〉

- 서울시체육회 체육진흥기금관리운영규정 제2조제3항
 - ③ 공공체육시설 운영 및 임대사업
- 서울시체육회 체육진흥기금관리운영규정 제6조제3항
 - ③ 체육회 목적달성에 필요한 경비를 조달하기 위한 수익사업 및 경기력 향상을 위한 시설확보, 체육인 복지에 필요한 투자사업비 확보를 위하여 체육진흥기금을 사용할 시는 운영 위원회 및 이사회 의결을 거쳐 사용할 수 있다.

서울시 엘리트 선수들의 은퇴 후 일자리 창출과 인근 학교 체육 교
육장소 및 서울시체육회의 직장운동경기부 훈련 장소로 활용, 대한
선수트레이너협회와 연계하여 선수들의 재활 및 회복훈련 장소를 활용 가
능한 점과

위탁사용료 없이 초기 투자비용, 시설 개·보수 비용 등 관리 운영에
수반되는 비용 일체 부담 등 서울시설관리공단에서 운영하는 것보
다 서울시체육회에서 운영방안이 합리적이라는 판단 하에

「서울특별시립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6조제1항
에 따라 “시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체육시설의 운영과
관련되는 사무 중 일부 또는 전부를 체육진흥에 이바지할 수 있
는 법인·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에 따라 서울시체육
회에 위탁하고자 하는 것임.

「서울특별시립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6조(운영의 위탁) ① 시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체육시설의 운영과 관련
되는 사무 중 그 일부 또는 전부를 체육진흥에 이바지할 수 있는 법인·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위탁·운영할 수 있는 체육시설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0. 서남권 돔구장

라. 동의안의 주요내용

- 이상의 과정을 거쳐 의회에 제출된 본 동의안의 주요내용은

서남권 돛구장 부설 수영장 및 체력단련장을 서울시체육회에 위탁하고, 위·수탁기간은 2016년 4월 1일부터 2017년 12월 31일 까지 한다는 것이며

위탁계약의 세부내용은

▲ 수영장 및 체력단련장 개장초기 안정화 기반 조성 ▲ 체육시설 운영의 공공성 확보 및 이용활성화 관리·운영방안 수립 및 시행 ▲ 위탁 범위, 위탁조건 및 사업수행에 관한 사항 ▲ 이용시민의 안전관리를 위한 재난관리계획 수립 및 교육실시 ▲ 시의 별도 재정지원없이 독립 재산제로 책임경영하되 초과 수익 발생시 시세입 처리.

- 본 동의안은 서울특별시체육회 위탁의 필요성으로

▲ 일반사업자 임대운영시 시설투자 대비 수익확보가 어려워 입찰 포기 또는 중도 사업포기 가능성이 높고 ▲ 이용시민에게 비용부담을 전가하는 등 시립체육시설의 공공성 훼손 우려 등을 들고 있으며

서울특별시체육회 위탁 기대효과로

▲ 서울시체육회 위탁시 체육시설 운영 노하우 및 전문 프로그램 활용으로 이용시민에게 저렴한 고품질의 서비스 제공 가능 ▲ 인근 학교의 체육 교육장소 및 운동부 훈련 장소로도 활용 가능함을 꼽고 있음.

마. 세부검토사항

(1) 서남권 돛구장 지역현황

- 구로구의 인구 분포 분석결과를 살펴보면, 31세~60세 인구가 많은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51세 이상의 경우 여성 인구가 많이 분포하고 있어 이들이 주요 고객이 될 것으로 예상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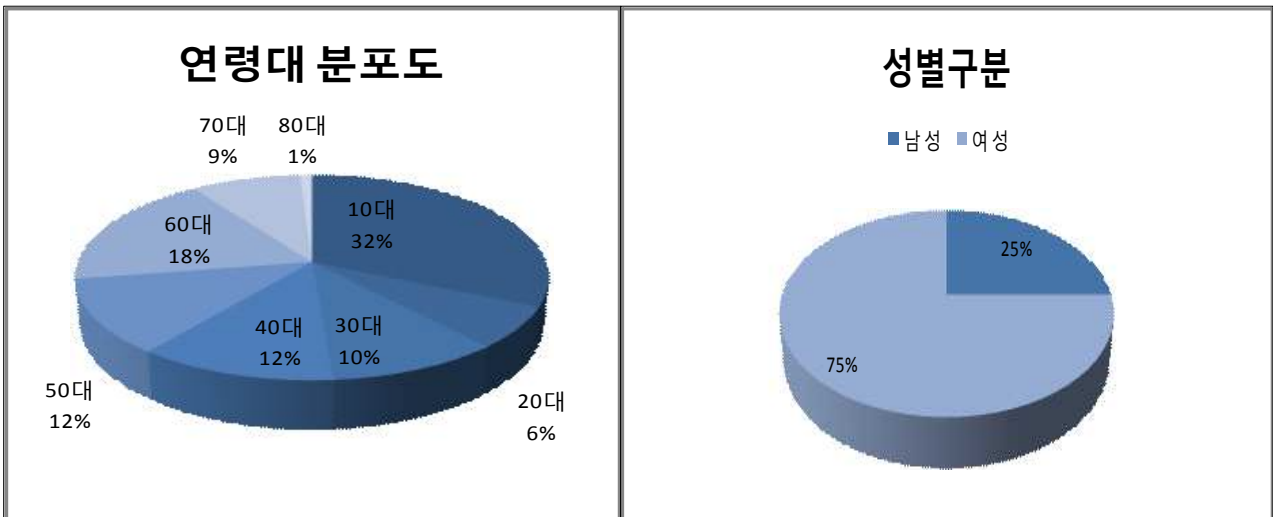
〈표1 구로구 인구분포도(2014.12.31 기준)〉

| 인 구 수 | | | 분 포 도 | |
|--------|--------|--------|--------|------------------------|
| 연령대 | 성 별 | | | |
| | 남 | 여 | | |
| 71세 이상 | 11,970 | 16,126 | 0~10세 | 21,552 (남), 20,422 (여) |
| 61~70세 | 20,407 | 20,964 | 11~20세 | 21,398 (남), 19,713 (여) |
| 51~60세 | 32,036 | 34,277 | 21~30세 | 29,400 (남), 29,734 (여) |
| 41~50세 | 35,156 | 32,951 | 31~40세 | 41,294 (남), 38,431 (여) |
| 31~40세 | 41,294 | 38,431 | 41~50세 | 35,156 (남), 32,951 (여) |
| 21~30세 | 29,400 | 29,734 | 51~60세 | 32,036 (남), 34,277 (여) |
| 11~20세 | 21,398 | 19,713 | 61~70세 | 20,407 (남), 20,964 (여) |
| 0~10세 | 21,552 | 20,422 | 71세 이상 | 11,970 (남), 16,126 (여) |

- 인근 구립 생활체육시설 이용인원 분석을 볼 때 10대이하의 유소년 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는 서울시 교육청에서 실시하는 의무교육 중 하나인 “초등학교 3학년 대상으로 수영교육(생존수영교육, 영법교육)”을 실시함에 따라 인근 학교의 영향으로 지속적인 추가 유입을 예상할 수 있음.

〈표2 구로구 체육센터 연령대 및 성별 분포 (2015년 기준)〉

| 구분 | 10대이하 | 20대 | 30대 | 40대 | 50대 | 60대 | 70대 | 80대이상 | 계 |
|-----|--------|-------|-------|--------|-------|-------|--------|-------|--------|
| 회원수 | 16,500 | 3,400 | 5,300 | 6,100 | 6,100 | 9,300 | 4,500 | 480 | 51,680 |
| 비율 | 32% | 7% | 10% | 12% | 12% | 18% | 9% | 1% | 100% |
| 성별 | 남성 | | | 여성 | | | 계 | | |
| 회원수 | 12,920 | | | 38,760 | | | 51,680 | | |



○ 또한 60대 이상의 이용률이 높은 것으로 나타난 바, 이는 구로구의 60대 이상의 여성인구가 많은 것으로 조사되었고,

서남권 돔구장의 생활체육시설을 개장하게 되면 60대 이상의 여성 인구가 많은 비율을 차지할 것으로 예상되며,

성별 구분시 여성의 비율이 남성의 비율보다 3배이상 차이가 나는 것은 구로구의 51세이상 여성 인구 분포의 영향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여짐.

〈표3 주변 공공체육시설 운영 현황〉

반경 2km내 구립 체육시설 5곳 위치



출처 : 서울시체육회

- 서울시체육회에서 조사한 바에 따르면 반경 2km 내에 위치한 시·구립 체육시설이 5곳으로 이 중 수영장 및 체력단련장이 동시 운영되는 곳은 양천구민체육센터, 구로구민체육센터, 신도림생활체육관 등 3곳, 헬스장만 운영되는 곳이 개웅산생활체육관, 수영장만 운영하는 구로청소년수련관이 있었음.

- 표4에서 보는바와 같이 수영장 및 체력단련장을 동시에 운영 중인 공공체육시설 양천구민체육센터, 구로구민체육센터와 신도림생활체육관의 운영비 및 수익을 비교해본 결과 전반적으로 이용인원, 규모, 운영비는 비슷하나 인력구성 중 수영장 인원과 수입에는 차이를 볼 수 있었고

이에 수익을 확인한 결과 양천구민체육센터와 구로구민체육센터는 평균 4억 8,000만원 적자를 보았으나 신도림생활체육관만 1억 1,300만원의 흑자¹⁾가 발생한 것을 볼 수 있었음.

1) 주부특화 프로그램, 수영장 및 체력단련장 특화 프로그램 개발과 수영장 최소인력 운영으로 발생했다고 함.

〈표4 '15 수영장 및 체력단련장 동시 운영중인 공공체육시설 현황〉

| 구 분 | 평균치 | 양천구민 체육센터 | 구로구민 체육센터 | 신도림 생활체육관 |
|------------|----------|-------------------------|-------------------------|-------------------------|
| 이용인원 | 26,041명 | 24,216명 | 26,586명 | 27,323명 |
| 규 모 | | 헬스장 825㎡, 수영장 1,887㎡ | 헬스장 832㎡, 수영장 1,945㎡ | 헬스장 818㎡, 수영장 1,645㎡ |
| 인 력 구 성 | | 체력단련장 4명, 수영장 26명 | 체력단련장 5명, 수영장 30명 | 체력단련장 4명, 수영장 15명 |
| 수입 | 1,485백만원 | 1,289백만원 | 1,332백만원 | 1,834백만원 |
| 운영비 | 1,767백만원 | 1,781백만원 | 1,800백만원 | 1721백만원 |
| 수익 | -282백만원 | - 492백만원 | -468백만원 | 113백만원 |

- 또한 체력단련장만 운영중인 개웅산 생활체육관의 경우 연 200만원의 수익을 보는 반면, 수영장만 운영중인 구로청소년수련관은 연 1억 1,400만원의 적자가 나고 있는 것을 보았을 때 서남권 돝구장이 수익을 내기는 어려울 것으로 사료됨.

〈표5 '15 한곳만 (수영장 또는 체력단련장) 운영중인 공공체육시설 현황〉

| 구 분 | 개웅산 생활체육관(체력단련장) | 구로청소년수련관(수영장) |
|-------|-----------------------|------------------|
| 위 치 | 서울시 구로구 개봉로 3길 108-20 | 서울시 구로구 구로동로 141 |
| 규 모 | 132㎡ | 904㎡ |
| 이용인원 | 연 1,824명 | 연 10,812명 |
| 인력구성 | 체력단련장 2명 | 수영장 8명 |
| 수 입 | 연 55백만원 | 연 612 백만원 |
| 운 영 비 | 연 53백만원 | 연 726백만원 |
| 수 익 | 연 2백만원 | - 연 114백만원 |

(2) 서울시설관리공단의 전문성 결여

- 서울시설관리공단은 장충체육관을 2014년 9월 1일부터 위탁운영하고 있었으며, 장충체육관 내 헬스장을 위탁운영할 업체를 5회에 걸쳐 공고하였으나 유찰됨에 따라 마감공사 후 다목적 공간으로 대관·활용하고 있으며,

1회 공고시기('14.12.8)와 마지막 공고시기('15.5.7) 중간에 서울시설관리공단이 시장과 문화체육관광본부장, 외부패널 5명이 참석한 가운데 체육시설관리사업소와 '기관별 돔구장 운영계획'을 발표('15.3.27)한 바에 따르면

〈표6 장충체육관 헬스장 공고현황〉

(단위 : 천원)

| 공고일시 | 1회 (‘14.12.8) | 2회 (‘14.12.18) | 3회 (‘14.12.30) | 4회 (‘15.4.22) | 5회 (‘15.5.7) |
|---|------------------|-------------------|-------------------|-------------------|------------------|
| 임대료 | 141,925 | 141,925 | 127,733 (10%감) | 113,540 (20%감) | 99,348 (30%감) |
| ※ 유찰사유 : 공간협소, 구조적 형태(굴곡, 기둥), 고가 임대료, 위치(지하), 협소한 주차여건, 인근 공공 및 민간 헬스장 다수 등 운영사업자의 고객유치 어려움. | | | | | |

출처 : 제264회 정례회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

서울시설관리공단은 표1과 같이 장충체육관의 헬스장이 임대료를 감소시키면서 지속적으로 공고를 내고 있는 상황에서 충분히 서남권 돔구장의 수영장 및 체력단련장의 활용 계획에 대해 면밀한 검토를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발표 자료에는 이러한 내용이 언급조차 되지 않았음.

- 그러나 서울시가 제출한 「서남권돔구장 운영·관리 사무의 서울특별시시설관리공단 위탁에 대한 동의안」은 서울시설관리공단이 월드컵경기장과 장충체육관의 운영경험을 바탕으로 돔구장의 안정적 시설 운영과 공기업으로서 다양한 상황에 대한 유연하고 효과적인 대처 및 조직 내 전문 인력을 활용하여 돔구장 활성화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하여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15.5.6), 민간위탁 운영평가위원회 심의('15.5.20)를 거쳐 제261회 정례회('15.7.10)시 문화체육관광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의결된바 있음.

〈위탁계약 주요내용〉

- ① 서남권돔구장 개관 초기 안정화 기반 조성
- ② 시설운영의 공공성 확보 및 이용 활성화
- ③ 서남권돔구장 부속 시설(편의점, 헬스장 등) 운영·사용허가 방안
- ④ 재난·재해 대응 계획 마련 등 안전 대책

- 또한 수영장의 규모가 서남권 돔구장($2,070m^2$)이 체육시설관리사업소에서 운영하는 잠실수영장($8,073m^2$)보다 약 4분의 1 크기임에도 불구하고 서울시설관리공단은 위탁받은 이후 자체적으로 수영장 및 체력단련장의 운영계획을 세워보지도 않고 제3자 위탁 동의안이 제출된 점은 전문성 결여를 반증하는 것으로 판단됨.

(3) 제3자 서울시체육회 위탁운영

- 서울시체육회는 엘리트체육과 관련된 사업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관광체육국 예산('16년 2,099억원)에서 5.97%, 체육과 예산('16년 1,384억원)에서 9.05%를 차지하고,

〈표7 최근3년 서울시체육회 예산 현황〉

| 구분 | 예산 | 기금 | 위탁사업(직장운동경기부) | | |
|------|--------|--------|---------------|--------|-------|
| | | | 예산 | 기금 | |
| 계 | 75,535 | 32,831 | 1,670 | 39,414 | 1,620 |
| 2014 | 23,307 | 10,137 | 300 | 12,400 | 470 |
| 2015 | 24,598 | 10,206 | 310 | 13,432 | 650 |
| 2016 | 27,669 | 12,527 | 1,060 | 13,582 | 500 |

매년 20억원씩 예산이 증액됨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의 사업이 이벤트성 사업과 위탁사업인 직장운동경기부 지원 사업으로 이루어져 있어 체육회가 스스로 자립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서울시 체육정책 가이드라인 수립을 위한 연구」 ('15 서울시의회 연구용역 보고서)에서 지적받은 바 있음.

〈표8 서울시체육회 사업 현황〉

| 구분 | 주요사업 |
|------------|---|
| 서울시 체육회 | - 전문체육 육성 : 전국체육대회 참가, 서울특별시장기(배)대회 개최 국내(외)체육행사 지원 |
| | - 체육진흥 활성화 : 54개 가맹경기단체 육성.지원 |
| | - 학교체육 진흥 : 전국소년체육대회 참가, 희망서울스포츠클럽 운영 등 |
| | - 국제체육행사 지원 : 각종 국제대회 파견, 자매도시 친선교류 |
| | - 공공체육시설 수탁운영 : 서울광장스케이트장, 서울시립창동테니스장 등 |
| | - 서울시직장운동경기부 운영 : 19개 종목 168명 선수단 관리운영 및 5개 전용훈련장 관리운영 |

- 이에 현재까지는 학교체육, 생활체육, 엘리트체육으로 나뉘어 각각 운영되던 제도들을 「국민체육진흥법」과 문화체육관광부의 지침에 의해 서울시 통합체육회가 추진됨에 따라

현 시대에 맞는 마케팅적 관점에서 유소년과 청소년, 어르신 등 생애주기별 체육프로그램 보급 확대와 생활체육 참여여건 조성, 엘리트 체육의 근간인 학교스포츠클럽의 활성화를 통한 스포츠경쟁력 강화, 스포츠 네트워크 강화 및 조직기반 조성 등과 함께 서울 체육회 선진화를 지향할 수 있도록 시스템과 제도를 구축해야 할 필요성이 있는 것으로 사료됨.

〈표9 서남권 돔구장 수영장 및 체력단련장 운영 시 SWOT분석〉



- 서울시체육회가 서남권 돛구장의 수영장 및 체력단련장을 운영할 계획으로 SWOT²⁾ 분석한 결과 강점으로는 전문체육단체이며, 구시립 체육센터(참고자료 1)를 운영해 본 경험이 있다는 점이며,

약점으로는 투자비용 확보가 미비하고 서남권 돛구장의 수영장 및 체력단련장의 인지도가 저조한 점, 또한 상시 교통혼잡이 일어나는 지리적 위치와 유사체육시설 5곳이 밀집해 있다는 위협적인 면이 있지만 전국 최초 돛구장이라는 이슈를 활용하여 프로스포츠와 생활체육을 연계할 수 있다는 점을 기회로 들 수 있음.

서울시체육회가 이 밖에 제시한 운영계획안을 살펴보면,


가맹경기단체, 직장운동경기부, 스포츠과학센터와 유기적인 협업 체계를 구축하여 ▲ 해당종목 경기단체 추천 의뢰를 통한 우수한 전문 지도자 채용 ▲ 직장운동경기부와 협업을 통한 우리시 은퇴 선수 활용방안 모색 ▲ 스포츠과학센터를 활용한 전문적인 스포츠 과학 서비스 제공 ▲ 재능나눔 행사, 원포인트 레슨 등의 행사 개최 시 서울시 대표선수들 파견 지원하여 전문성 및 수익성을 강화하고 공익성과 공공성을 추구하여 인근 체육시설과의 차별성 및 전문성의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분석하고 있음.

- 또한 현재 서울광장 스케이트장을 운영하면서 2004년부터 현재까지 입장료 및 대여료를 1인 천원으로 동결하여 부담 없는 가격과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며, 시민들의 건강을 위하여 2013년부터 통합 대기환경지수를 측정하여 일정한 수준 이상으로 올라갈 경우

2) SOWT은 Strenght(강점), Weakness(약점), Opportunitirs(기회), Threats(위협)의 4가지 요인별로 분석하여 전략을 세우는 방법론임.

운영을 중단하는 등 운영수익보다 시민편의 중심으로 운영하고 있으므로 수영장 운영시 양질의 수질관리를 위해 적극 투자하며, 실시간 수질현황을 제공하여 시민들이 시설에 대한 신뢰도를 향상시키기 위해 노력하겠다는 것임.

〈표10 스케이트장 및 수영장 대기환경 및 수질관리 예시〉

| 서울광장 스케이트장 | 수영장 수질 현황(안) |
|--|---|
|  |  |

바. 종합의견

- 서울시의 일관되지 못한 체육시설 관리 정책과 서울시설관리공단의 체육시설 운영 전문성에 대한 논란에도 불구하고 우리 위원회는 제 261회 정례회(2015년 7월 10일)에서 서남권 돛구장 운영 사무의 시설공단 대행에 동의한 바 있음.

이는 상암월드컵경기장, 장충체육관 등 운영경험을 바탕으로 돛구장의 안정적 시설운영과 공기업으로서 다양한 상황에 대한 유연하고 효과적인 대처가 가능하며, 조직내 전문 인력을 활용하여 적극적인 홍보·마케팅을 통한 돛구장 활성화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됨에 따라 위탁하게 됨.

- 그러나 서울시설관리공단이 서남권 돛구장 개관 3개월 만에 수영장 및 체력단련장 운영을 서울시체육회에 위탁운영하기 위하여 또 다시 동의를 요청한 것은 지난 해 동의안을 처리하면서 제기되었던 우려가 잘못되지 않았음을 반증하는 것임.

- 현재 서울시는 어떠한 사업이든 필요하면 서울시설관리공단에 위탁할 수 있게 되어 있는데 자체에 특화된 사업만을 서울시설관리공단이 수행하도록 한정하고, 기존의 다양한 수탁사업은 시간을 두고 정비해 나갈 수 있도록 그 정비방향을 서울시설관리공단 조례에 명시하는 방안도 함께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보여지며,

또한 시 직영, 공단 대행, 민간위탁, 자치구 위임 등 혼재되어 있는 체육시설 운영(참고자료6) 과 관련하여 서울시가 종합적이고 근본적인 대책을 수립할 것을 다시 한번 촉구하는 바임.

서남권 돔구장 시설현황

- 위 치 : 구로구 고척동 63-6 번지일대
- 규 모 : 지하 2층, 지상 4층, 연면적 83,476 m^2 (관람석 18,076석)
- 사업기간 : '07. 7 ~ '15. 9 (공사 : '09. 2 ~ '15. 9)
- 사 업 비 : 2,706억원(보행광장 포함)
(건립비 : 1,948억원, 교통대책 758억원)

| 합계 | 돔야구장 | 돔야구장 주변 교통대책 | | | | | |
|-------|-------|--------------|------------|-----------|--------------|-----------|-----------|
| | | 소계 | 보행광장 신설 | 고척교 확장 | 구일역사 서측신설 | 교통 전광판 | 인양천 광장 |
| 2,706 | 1,948 | 758 | 387.8 | 201.7 | 137.9 | 9.6 | 21 |

- 감 리 자 : (주)선엔지니어링 종합건축사사무소 외 2개사
- 시 공 자 : 현대산업개발(주) 외 2개사 (턴키)

| 구 분 | 면 적(m^2) | 용 도 | |
|-----|--------------|--------|--|
| 합 계 | 83,476 | | |
| 지상 | 스탠드 | 7,314 | 내/외야 스탠드 2단 |
| | 4 층 | 4,569 | 매점, 공조실 |
| | 3 층 | 11,231 | 스카이박스, 매점, 방송실, 스탠드 1단 |
| | 2 층 | 4,260 | 의전실, 매점 |
| | 1 층 | 23,205 | 그라운드, 근린생활시설, 선수실, 보도실, 주차장, 헬스장, 야외 축구장/농구장 |
| | 소 계 | 50,582 | |
| 지하 | 1 층 | 21,476 | 야구기념관, 판매시설, 선수연습실, 주차장 |
| | 2 층 | 11,418 | 수영장, 주차장 |
| | 소 계 | 32,894 | |

서울특별시체육회 일반현황

- 기 관 명 : 서울특별시체육회
- 대 표 자 : 박 원 순
- 설립근거 : 국민체육진흥법 제33조, 제18조 제2항
- 설립목적
 - 우수 선수 발굴 양성
 - 학교체육 및 생활체육 진흥
 - 스포츠를 통한 국제 친선 도모
 - 체육의 범시민화로 서울체육문화 발전에 기여
- 연 혁
 - 1953. 2 서울특별시체육회 설립(발기인 16명)
 - 1953. 3 대한체육회 정관에 의거 서울특별시 지부로 활동
 - 1980. 2 본회 규약 대한체육회 승인으로 경기단체 가맹
 - 2007. 3 서울시 중랑구 상봉동 소재 서울특별시체육회관 입주
 - 2015. 5 현재 49개 정가맹단체 및 5개 준가맹단체등 총 54개 경기단체 관리
- 조 직
 - 3부 6팀 정원 35명으로 운영

서울시체육회 조직도



참고자료 3 서울시체육회 구·시립체육시설 운영현황

□ 과거 운영했던 시립체육시설 3곳³⁾

● 성동구민체육센터



- 위치 : 서울시 성동구 성수동1가 685-20
- 규모 : 총5,930.16㎡(지하2층, 지상3층)
- 운영내용 : 개장 및 총괄운영
- 운영기간 : 1995. 3 ~ 2004. 10
- 주요시설 : 수영장, 휘트니스클럽, 다목적체육관 등

| 운영성과 | 년도 | 2002 | 2003 | 2004 |
|------|------|----------|----------|----------|
| | 인력구성 | 48명 | 48명 | 38명 |
| | 이용인원 | 연 7만 3천명 | 연 7만 6천명 | 연 7만 2천명 |
| | 수입 | 2,798백만원 | 2,521백만원 | 2,432백만원 |
| | 운영비 | 2,438백만원 | 2,419백만원 | 2,280백만원 |
| | 수익 | 360백만원 | 102백만원 | 152백만원 |

● 열린금호교육문화관



- 위치 : 서울시 성동구 금호동 금호초교 내
- 규모 : 총4,577.1㎡(지하3층)
- 운영형태 : 개장 및 총괄운영
- 운영기간 : 2002. 5 ~ 2004. 12
- 주요시설 : 수영장, 휘트니스클럽 등

| 운영성과 | 년도 | 2002 | 2003 | 2004 |
|------|------|----------|----------|----------|
| | 인력구성 | 29명 | 29명 | 26명 |
| | 이용인원 | 연 2만 9천명 | 연 3만 6천명 | 연 4만 8천명 |
| | 수입 | 1,089백만원 | 1,395백만원 | 1,411백만원 |
| | 운영비 | 831백만원 | 1,459백만원 | 1,497백만원 |
| | 수익 | 258백만원 | -64백만원 | -86백만원 |

3) 2004년 10월 성동구도시관리공단이 창립함에 따라 「서울특별시 성동구도시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20조(체육시설의 관리 및 운영)제2항에 의해 시설운영을 이관함.

● 마장국민체육센터



- 위치 : 서울시 성동구 마장동 399-98
- 규모 : 총2,543㎡(지하1층, 지상2층)
- 운영형태 : 개장 및 총괄운영
- 운영기간 : 2004. 5 ~ 12
- 주요시설 : 수영장, 휘트니스클럽, 다목적체육관 등

| | | |
|------|------|----------|
| 운영성과 | 년도 | 2004 |
| | 인력구성 | 23명 |
| | 이용인원 | 연 2만 7백명 |
| | 수입 | 869백만원 |
| | 운영비 | 612백만원 |
| | 수익 | 257백만원 |

□ 현재 운영중인 시립체육시설 2곳

● 창동테니스장



- 위치 : 서울시 도봉구 창4동 1-6 창동운동장내
- 규모 : 실내3면(2,422.27㎡), 실외6면(5,717㎡)
- 운영형태 : 개장 및 총괄운영
- 운영기간 : 2005. 9 ~ 현재
- 주요시설 : 실내·외 테니스장
- '15년 수익 : 9,000만원 흑자

● 창동 실내골프 연습장



- 위치 : 서울시 도봉구 창4동1-6 창동운동장내
- 규모 : 총386㎡(지하1층)
- 운영형태 : 자체운영
- 운영기간 : 2014. 5 ~ 현재
- 주요시설 : 실내 골프연습장(8타석)
- '15년 수익 : 400만원 흑자

참고자료 4 **서울시체육회 시설별 세부운영계획(안)**

| 구분 | 시설운영 | 운영계획 |
|---------|--|--|
| 휘트니스 클럽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체련장 ○ 탈의실 ○ 샤워장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인근 학교 교육장소 및 운동부 훈련 장소로 활용 ○ 재활 및 회복훈련 장소 활용 ○ 서울시 자치구청 직장운동부와 협업을 통한 전문 휘트니스 프로그램 운영 ○ 보디빌딩 협회 소속 전문 강사 영입을 통한 GX, 스피닝, 크로스핏, PT 등 다양한 프로그램 운영 ○ 외부강사를 활용한 요가, 필라테스, 에어로빅 등 프로그램 운영 ○ 광진구청 보디빌딩팀 및 우리시 보디빌딩 대표선수 초청 지역주민대상 무료강습회 등 다양한 재능나눔 행사 개최 ○ 서울스포츠과학센터 과전을 통한 스포츠과학 서비스 제공 |
| 수영장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메인풀(25m / 6레인) ○ 보조풀(유아풀) ○ 탈의실 ○ 샤워장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인근 학교 교육장소 및 방과후 수업 장소로 활용 ○ 재활 및 회복훈련 장소 활용 ○ 수영연맹 소속 전문 강사 영입을 통한 연령대별 맞춤 수영수업 진행 ○ 우리시 수영 유망주 육성을 위한 선수 육성반 운영 및 본회 주니어 스포츠 클럽 수영종목 신설 운영 ○ 어린이 맞춤형 수상안전사고 예방 프로그램 운영 ○ 실버 스포츠 프로그램 운영 ○ 외부강사를 활용한 아쿠아로빅, 수중 유산소 운동 등 다양한 프로그램 운영 |

- 인력구성(안)

| 계 | 행정(5명) | | | 휘트니스클럽(5명) | | 수영장(8명) | | 기술(6명) | | |
|-----|--------|----|----|------------|----|---------|----|--------|-----|----|
| | 총괄 | 사무 | 안내 | 팀장 | 강사 | 팀장 | 강사 | 미화 | 기관실 | 관리 |
| 24명 | 1 | 1 | 3 | 1 | 4 | 1 | 7 | 3 | 1 | 2 |

참고자료 5 서울시체육회 수지분석

□ 초기투자비용

● 초기투자비용 : 총 500,000천원

(단위 : 천원)

| 구 분 | 인테리어 공사 | 장비구입 | 기타비용 | 합 계 |
|--------|---------|---------|--------|---------|
| 휘트니스클럽 | 150,000 | 200,000 | 20,000 | 370,000 |
| 수영장 | - | 100,000 | 30,000 | 130,000 |

□ 경영수지 내역

(단위 : 천원)

| 구 분 | 내 용 | 금 액 | 비 고 |
|--------|---------------------------------|-----------|--------------------------|
| <운영수익> | | 963,600 | |
| 운영수입4) | 휘트니스클럽5) | 132,000 | 주변 인근 3개 공공체육시설 통계 적용 |
| | 수 영 장6) | 831,600 | |
| <지출비용> | | 1,015,200 | |
| 인건비 | 계 | 415,200 | |
| | 정규계약직 5명 | 102,000 | 창동테니스장 인건비 적용 |
| | 시간제 19명 | 313,200 | |
| 공과금 | 계 | 600,000 | |
| | 수도광열비 | 400,000 | 주변 인근 3개 공공체육시설 통계 적용 |
| | 유지보수비(시설 및 기구) 제경비(홍보, 보험 등) | 200,000 | |

| | | |
|---------|-----------|----------|
| 수입(천원) | 지출(천원) | 순수익(천원) |
| 963,600 | 1,015,200 | - 51,600 |

⇒ 평균 연 **51,600천원 적자발생** 예상

□ 기대효과

- 공공시설로서의 공익성 추구 및 이미지 제고
- 엘리트체육과 생활체육의 연계
- 비인기종목 활성화, 은퇴선수 일자리 창출
- 전문체육의 사회적 기여 도모
- 지역체육활성화, 인프라구축에 기여

4) 수입 이용인원 산출은 '15년 연간 월평균 이용인원을 최대치로 하고 연간 최소 월이용 인원을 최소치로 하여 산출평균

5) 휘트니스클럽 수입(최대 300명+ 최소200명)/2×월 이용료(44,000원)×12=132,000천원

6) 수영장 수입(최대 1,800명+ 최소1,500명)/2×주3회 월 이용료(42,000원)×12=831,600천원

참고자료 6

서울시립 체육시설 내 수영장, 체력단련장 운영현황

| 시립체육시설 | | 시설규모 | 개관일 | 운영 방식 | 운영기관 | 계약기간 | 수입현황 ('15년) (천원) | 지출현황 ('15년) (천원) | 비고 |
|----------|-----|---|---------------------------|-----------------|---------------|---------------------|------------------|------------------|--|
| 잠실 제1수영장 | 수영장 | 경영풀 1,250㎡(25m×50m, 10레인), 다이빙풀 625㎡(25m×25m, 10레인) | '06.1.10 '12.1.1 (재개장) | 시 직영 | 서울체육 시설사업소 | - | 1,809,444 | 1,694,649 | 공무원 인건비 불포함 |
| | 헬스장 | 376㎡ | '14.3.1 | 시 직영 | 서울체육 시설사업소 | - | 124,144 | 72,418 | 초기 기구 구매 비용 불포함 |
| 잠실 제2수영장 | 수영장 | 경영풀 3,189.4㎡(50×25×1.8m, 10레인) | '09.11.10 | 무상 임대 | 서울시 교육청 | '14.1.1 ~ '16.12.31 | 무상 | - | |
| | | 다이빙풀 525.4㎡(20×15×5m, 6대) | '09.11.10 | 임대 | (사)푸른한강 자강운동부 | '13.9.17 ~ '16.9.16 | 37,258 | - | 다이빙풀 2년 갱신 가능 |
| 창동운동장 | 수영장 | 경영풀 1,360㎡(25m×15m×1.2m, 6레인) 유아풀(5m×13m×1m, 2레인) | '05.09 | 도봉구 위임후 공단에 재위탁 | 도봉구시설 관리공단 | - | 1,367,868 | 3,585,898 | *도봉구 시설관리공단 위탁운영 *지출 통합운영으로 사업장별 구분 불가 |
| | 헬스장 | 313㎡ | '05.09 | “ | 도봉구시설 관리공단 | - | 259,719 | | |

4. 질의 및 답변요지

제266회 임시회 제5차 문화체육관광위원회(2016년 3월 7일)

질의 : 서남권 돛구장의 수영장 및 체력단련장의 위탁사유는 민간기관의 '전문성'을 활용하고자 한다. 민간보다 서울시체육회가 더 잘 운영할 수 있는가?

답변 : 일반 민간사업자 운영시 임대료 부담이 높은 이용료로 이용 시민에게 전가될 가능성이 있고, 이용대상 시민들의 기대치를 고려할 때, 저렴한 비용으로 다양한 프로그램 운영을 통해 생활체육의 질 향상에 기여할 수 있어야 한다고 봄. 따라서 전문성도 중요하지만 일반입찰을 통한 민간임대운영 보다 서울시체육회 등 공공기관에 제3자 위탁운영하는 것이 공공성과 효율성을 동시에 확보할 수 있는 상대적 우위에 있는 시설 운영방안이라 생각함.

질의 : 그러면 공공성과 효율성은 어떻게 확보할 것인가?

답변 : 세월호 사건 등 안전문제에 대한 문제들이 중요시 되는 바, 교육청에서는 초등학교 3학년까지 생존수영을 통하여 위기상황에서 자기 생명 보호 및 안전 능력을 강화하고자 하는 수업이 의무적으로 하고 있음. 이에 인근 학교 체육 교육장소 및 서울시체육회의 직장운동경기부 훈련 장소로 활용하며 수영장 및 체력단련장을 주니어 스포츠클럽의 장으로 운영하여 엘리트 선수를 육성하고, 생활체육 진흥을 위한 시민개방 체육시설로 운영할 것임. 또한 서남권의 랜드마크로서 자리매김하기 위하여 안정화와 발전적인 면에서도 공공성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한 것으로 생각함.

질의 : 서울시체육회는 전문조직, 인력 운영경험이 있는가, 인력운영면에서는 서울시체육회의 장점은 무엇인가?

답변 : 현재 서울시체육회에서는 창동테니스장 및 골프장을 운영하고 있으며, 성동구민체육센터(1995.3 ~ 2004.10), 열린금호교육문화관(2002.5 ~ 2004.12), 마장국민체육센터(2004.5 ~ 12)를 운영하다가 성동구도시관리공단이 2004년 10월 창립함에 따라 시설운영을 이관한 경험을 바탕으로 초기의 안정적인 체육시설 운영 및 활성화가 가능하다고 봄. 인력의 경우 전문체육기관으로서 서울시 소속 종목별 우수 전문 지도자 및 은퇴선수를 활용하여 인력 확보면에서 안정적이며, 서울시체육회 산하 종목별 가맹단체인 수영연맹, 보디빌더협회 등을 지도·감독하는 입장에서 지도자 협업체제는 민간이나 타 조직보다 장점이 있는 것으로 사료됨.

질의 : 서울시시설관리공단은 처음부터 수영장 및 체력단련장을 자체 운영할 계획이 없었는가?

답변 : 2015년 7월 서울시가 서울시시설관리공단에 민간위탁을 줄 때 부속시설에 대해서는 공개입찰로 운영할 계획이었으며, 수영장 및 체력단련장 역시 자체 운영할 경우 인력과 예산이 증가됨에 따라 공개입찰로 민간에 위탁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던 바, 같은 해 8월부터 서울시체육회에서 운영하고자 하는 의지를 보인던 중 서울시체육회의 운영 능력을 충분히 검토 후 추진하라는 시장 지시에 의해 진행되었던 사항이었음.

5. 토론요지 : 없음.

6. 소위원회 심사보고 요지 : 구성하지 않았음.

7. 심사결과 : 원안 가결(출석위원 전원 찬성)

8. 소수의견 요지 : 없음.

9.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

서남권 돛구장 부설 수영장 및 체력단련장에 대한 제3자 위탁 동의안

| | |
|----------|------|
| 의안 번호 | 1007 |
|----------|------|

제출년월일 : 2016년 2월 11일
제출자 : 서울특별시

1. 제안이유

- 가. 시설관리공단이 우리시로부터 수탁받아 운영·관리하고 있는 서남권 돛구장 중 전문적인 관리가 필요한 수영장 및 체력단련장을 서울특별시체육회에 위탁하기 위하여
- 나. 『서울특별시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9조 제5항에 따라 시의회 의결을 받고자 하는 것임

『서울특별시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9조(대행사업) ① 공단은 시장의 승인을 얻어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그 밖의 위탁자의 사업을 대행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위탁계약에 의한다.

⑤ 공단은 제1항에 따른 사업을 대행함에 있어 시장의 승인을 얻어 그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3자로 하여금 시행하게 하는 경우에도 시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 다만, 이미 시의회의 승인을 얻은 사업이 완료되어 재계약하는 경우와 청소·경비·일상적 시설관리업무를 재위탁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⑥ 제1항 및 제5항에 따른 비용의 부담에 관하여는 제25조에 따르고, 그 이외의 필요한 사항은 위탁자와 수탁자가 상호 협의하여 정하되 시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2. 주요내용

- 가. 서남권 돛구장 부설 수영장 및 체력단련장 제3자 위탁 개요
- 대상시설 : 서남권 돛구장 부설 수영장 및 체력단련장
 - 수탁자 : 서울특별시체육회(회장 : 박원순)
 - 위·수탁기간 : 2016. 4.1 ~ 2017.12.31.(약 1년 8개월)
 - 위탁방법 : 시설관리공단과 서울특별시체육회간 협약

나. 제3자 위탁 주요내용

- ① 수영장 및 체력단련장 개장초기 안정화 기반 조성
- ② 체육시설 운영의 공공성 확보 및 이용활성화를 관리·운영방안 수립 및 시행
- ③ 위탁 범위, 위탁조건 및 사업수행에 관한 사항
 - ▶ 위탁재산의 관리·운영 및 시설·장비 유지보수에 관한사항
 - ▶ 사업의 운영수익금, 사업의 지출에 관한 사항
 - ▶ 사용료 징수시 「서울특별시립 체육시설 및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적용
- ④ 이용시민의 안전관리를 위한 재난관리계획 수립 및 교육실시
- ⑤ 시의 별도 재정지원없이 독립채산제로 책임경영하되 초과 수익 발생시 시세입 처리
 - ▶ 위탁사용료 없이 초기 투자비용, 시설 개·보수 비용 등 관리 운영에 수반되는 비용 일체 부담

다. 서울특별시체육회 위탁의 필요성

- 일반사업자 임대운영시 시설투자 대비 수익확보가 어려워 입찰 포기 또는 중도 사업포기 가능성이 높고, 이용시민에게 비용부담을 전가하는 등 시립체육시설의 공공성이 훼손될 우려가 있음

※ 유사사례

- ◆ 장충체육관 부설 체력단련장이 5회 유찰('15.5.7)됨에 따라 시설관리공단에서 용도변경하여 직접 운영

- 서울특별시체육회 위탁시 창동테니스장 및 골프장 운영 노하우 및 전문 프로그램 활용으로 이용시민에게 저렴한 고품질의 서비스 제공이 가능하고
- 인근 학교의 체육 교육장소 및 운동부 훈련 장소로도 활용이 가능함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서울특별시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9조
 - ▶ 제3자 위탁시 시의회 의결 및 시장 승인 필요
-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14조
 - ▶ 수탁기관은 수입금의 일부를 시설운영에 사용 가능
- 「서울특별시립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6조
 - ▶ 시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체육시설의 운영과 관련되는 사무 중 일부 또는 전부를 체육진흥에 이바지할 수 있는 법인·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해당사항 없음

라. 기 타

※ 작성자 : 체육정책과 체육정책팀 김인숙 (☎2133 -2678)